

도시관리계획(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418호(2001.12.15.)로 도시계획[양재지역(개포택지개발지구) 지구단위 계획구역]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408호(2004.12.10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6월 26일

서 초 구 청 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양재시장)의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2025년 제1차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(수정가결)을 반영하고, 양재시장정비구역으로 일부 편입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는 사항임

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①	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초구 양재동, 우면동, 염곡동 일대	3,067,090.0	감)668.3	3,066,421.7	2001.12.15. (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418호)

- 결정(변경)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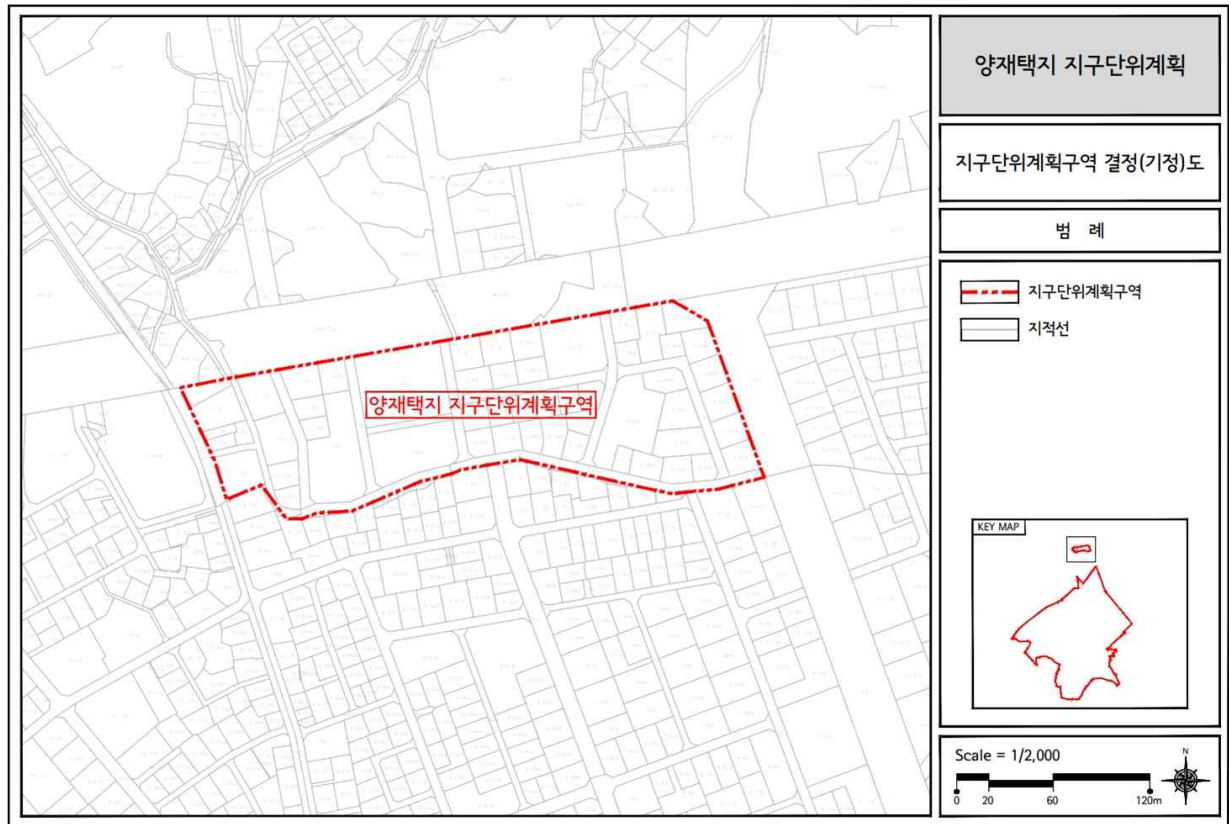
구분	위 치	면 적(㎡)	변 경 사 유
제척	양재동 1-7	668.3	- 구역 밖 양재동 8-1번지와 시장으로 결정되어 있으나, 양재시장 시장정비구역으로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 시장이 폐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본 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함

※ 제척 면적은 양재동 1-7번지 공부상 면적 기준임

3. 관계도면 :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지형도면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기정)도]



[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도]

